



“보이스피싱 때문에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어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피스)

〈설문〉

안녕하세요. 24살 여자입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 재택근무라는 말에 속아 사건에 휘말리게 됐어요.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회사로 넘겨주는 일을 3일간 한 건데요. 알고 보니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정지가 됐고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MC= 네, 정말 이런 사연을 보면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이렇게 일이 진행돼버린건데 변호사

님 정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걸 모르고 한 행동이라면 어떻게 선처가 가능할까요?

▲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네, 이런 문자 저도 굉장히 자주 받는데 일단 말이 안 되죠.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타인한테 보내주고 수수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을 타인한테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처벌하는 규정 자체는 없어요. 이게 약간 좀 신중인데 옛날에 보이스피싱이 어땠냐 하면 통장을 아예 빌려주거나 아니면 체크카드, 현금카드, 이런 걸 그쪽한테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인출책이 가서 그걸 뽑아오고, 이런 건 접근매체 대여라고 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이걸 빌려주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내가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역행위예요. 근데 이걸 요즘 많이 하는 것 같

아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다만 이런 행위만으로 수수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위법행위 아닌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없겠지, 하다가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뭔가 사기 공범,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이런걸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일단 증거들을 잘 남겨야 되겠죠. 카톡을 했다면 카톡, 문자로 했다면 문자, 통화면 통화한 내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보이스피싱 가담한 건 절대 아니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주장하고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MC= 네, 아직 어려서 몰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재택근무라는 말에 속아서 그런 경우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가담을 했다면, 처벌을 아까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피스)= 네, 범죄사실에 이용된 사실을 알면서 지금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면 전자금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 경우 사기에 대한 방조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MC=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분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식으로 좀 입증을 해야 하는지 참 그런데, 보이스피싱 같은 게 참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기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가해자를 찾게 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보이스피싱이 참 나쁜 거거든요.

▲ 김서암 변호사= 네, 이게 뭐 보이스피싱 범죄단을 찾기만 한다면야 그 사람들 당연히 이제 전기통신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수괴가 잡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인출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잡히는 건데 그 사람들 뭐 돈 없어서 일일 알바 형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겨봐야 판결문이 쓸모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참 이게 그 소송보다는, 이런 게 있어요. 수괴가 잡히지 않으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되고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금방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돈을 보내고 나면 이 사람의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라고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하는데,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피해금 송금 이체한 계좌가 있는 계좌 개설된 금융회사 상대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제 거기에서 지급 정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30분 이내에는 이게 이체한도를 다시 재이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 내에 하면 가장 좋고 시간 내에 안 했더라도 가끔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계좌에 돈이. 정말 빨리 못 빼가지고 내지는 사고가 났다든지 본인들 내부에서도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를 해버리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계좌에 있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가 있거든요. 이 절차를 진행하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빨리 해야 됩니다. 이미 돈이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이 나가버린 계좌에 지급정지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 MC= 30분 이내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좀 한참 후에 아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참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대포통장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혹시 추후에 금융관련 일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송혜미 변호사= 네, 경찰조사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면 금융질서문란자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융질서문란자로 간주가 된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대출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동안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법률방송뉴스)